

(사)한국데이터산업협회 정관

제정 2022. 04. 27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데이터산업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라 하며, 영문으로 Korea Data Industry Association(약칭 KODIA)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협회는 ‘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’에 의거 데이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데이터의 이용 촉진을 통하여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및 데이터 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지회와 부설기관을 국내·외에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데이터 관련 기술 및 데이터산업 관련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
2. 데이터 관련 기술의 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활동
3. 데이터 관련 기술 및 데이터산업 관련 통계의 개발·작성·수집 및 관리
4. 국내외 데이터 및 데이터산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
5.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및 데이터사업자의 권익 보호활동
6. 데이터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대정부 정책 발굴 및 건의
7.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·개발 사업
8. 데이터 산업의 진흥을 위한 세미나, 전시회 등 개최 및 지원활동
9. 데이터산업 종사자의 위상제고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10. 회원의 상호 협력을 위한 회원 진흥에 관한 사항
1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의 위탁받는 사업

12.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

제5조(조직)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.

1. 분과위원회, 자문위원회, 전문위원회
2. 이사회
3. 사무국
4. 지회
5. 부설기관 : 데이터연구소, 데이터아카데미, 데이터리더스포럼 등

제2장 회 원

제6조(회원 종류 및 자격) 회원은 본 협회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
1. 정회원 : 데이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며,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취지에 찬동하는 자
2. 특별회원 : 협회 발전에 기여하며, 본 협회 취지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, 대학, 연구소 등에 소속된 자

제7조(회원의 가입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쳤을 때 입회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.

1. 제6조에 명시된 회원 자격 구비
2. 입회신청서 제출
3. 회원 자격에 따른 소정의 입회비, 특별회비, 연회비의 납부

제8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회원은 자격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며, 본 협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.

1. 정회원은 본 협회의 정관 및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가지며,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2. 특별회원은 해당 기관 및 단체, 대학, 연구소 등에서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정회원의 권리를 인정하다.

제9조(회원의 탈퇴 및 제명 등)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

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② 본 협회의 정회원은 회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이 정지되며, 회비가 완납되어야 복권된다. 다만, 자격정지 기간이 2년 연속인 경우 제명할 수 있다.

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10조(회원의 징계 및 배상) ① 회원이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 다만, 징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② 회원이 협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회원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11조(회비) 본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,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정하며,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3장 임 원

제12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.

1. 회장 : 1인
2. 수석부회장 : 2인 이내
3. 부회장 : 40인 이내
4. 이사 : 60인 이내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을 포함)
5. 감사 : 1인

제13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,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제14조(임원의 임기) ①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감사를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

2년으로 하며,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.

②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제15조(임원의 선출 및 해임) ① 임원의 선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.

1.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,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2.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
3.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4. 각 임원의 권위 시에는 해당 임원의 선출방식에 따라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
② 임원이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,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 또는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제16조(명예회장, 고문)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.

1. 명예회장은 본 협회와 데이터산업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. 또한, 임기를 만료한 회장의 경우에는 명예회장으로 보임하되, 차기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2. 고문은 본 협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하며,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7조(임원의 직무)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 총괄한다.

2.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수석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최고 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3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회장 또는 이사회,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처리한다.

4.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, 본 협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18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본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,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며,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본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, 총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,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4장 총회

제19조(총회의 권한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5. 기타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

제20조(총회의 소집) ①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.

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,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소집할 수 있다.

③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4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21조(총회 의결 정족수)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

고,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한다.

제22조(총회 의결 제척 사유) 의장,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의장, 임원 또는 회원과 법인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이나 본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의장,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협회와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

제23조(의결권의 대리) ① 회원은 총회에서, 이사는 이사회에서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.

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4조(의사록)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은 출석한 의장과 출석한 이사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, 협회는 의사록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5장 이사회

제25조(이사회 권한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정관 및 규칙에 관한 사항
2.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
3. 협회 운영과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5.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
7. 본 협회 정관에 의한 그 권한에 관한 사항
8. 기타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

제26조(이사회 소집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
1. 정기 이사회는 매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.
2.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이사 10인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.
3.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그 안건과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7조(이사회 의결 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8조(서면결의)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6장 사무국 및 부설기관

제29조(사무국)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
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30조(부설기관 등) ① 협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5조에 규정한 위원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 및 부설기관의 직제,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7장 재정 및 회계

제31조(재산의 구분)

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

은 별지1로 기재한다.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1.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2. 정부,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기부받은 현금, 토지, 건물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
 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-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2조(재산의 관리) ① 법인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담보,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할 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③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.

④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3조(재정) 본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취득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회원의 회비 : 입회비, 연회비, 특별회비
2. 정부 또는 공공기관 보조금 및 출연금, 기부금
3.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
4.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수입

제34조(회비의 부과징수)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규칙으로서 정한다.

제35조(회계연도)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라,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6조(예산 및 결산) 본 협회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 예산서 1부
2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·지출 결산서 1부

3.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
제37조(임원의 보수)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38조(예산외 채무 등)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9조(잉여금의 처리) 본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,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장 보 칙

제40조(정관 변경)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1조(해산)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42조(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) 본 협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
제43조(규칙의 제정)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협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 의결로 이를 제정한다.

제44조(준용) 본 정관 및 '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'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회원 자격의 승계) 기존 '한국데이터산업협회'의 회원은 본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자격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 당초의 임원)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은 별지 2과 같다.

제4조(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)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2022년 4월 27일

사단법인 한국데이터산업협회

설립발기인	이 형 철 (인)	설립발기인	강 용 성 (인)
설립발기인	김 인 현 (인)	설립발기인	김 종 현 (인)
설립발기인	이 정 열 (인)	설립발기인	홍 병 진 (인)
설립발기인	이 우 용 (인)	설립발기인	정 병 주 (인)
설립발기인	이 우 영 (인)	설립발기인	조 풍 연 (인)
설립발기인	조미리아 (인)	설립발기인	이 찬 영 (인)
설립발기인	장 인 수 (인)	설립발기인	김 속 희 (인)

설립발기인 오 승 택 (인)	설립발기인 이 화 식 (인)
설립발기인 김 학 성 (인)	설립발기인 장 미 호 (인)
설립발기인 김 동 식 (인)	설립발기인 송 광 현 (인)
설립발기인 강 성 (인)	설립발기인 강 현 섭 (인)
설립발기인 홍 정 화 (인)	설립발기인 박 상 우 (인)
설립발기인 안 동 욱 (인)	설립발기인 김 도 현 (인)
설립발기인 남 형 규 (인)	설립발기인 김 태 진 (인)
설립발기인 이 문 기 (인)	설립발기인 김 시 연 (인)
설립발기인 정 연 일 (인)	설립발기인 정 재 훈 (인)
설립발기인 이 춘 식 (인)	설립발기인 전 영 하 (인)
설립발기인 배 성 환 (인)	설립발기인 박 해 정 (인)
설립발기인 신 동 욱 (인)	설립발기인 이 철 순 (인)
설립발기인 강 락 근 (인)	설립발기인 권 영 범 (인)
설립발기인 이 은 영 (인)	설립발기인 최 성 순 (인)
설립발기인 정 종 섭 (인)	설립발기인 황 규 종 (인)
설립발기인 강 희 창 (인)	설립발기인 오 수 택 (인)

설립발기인 주 동 원 (인)

설립발기인 이 재 성 (인)

설립발기인 이 호 재 (인)

설립발기인 이 욱 재 (인)

설립발기인 장 영 규 (인)

설립발기인 오 세 창 (인)

설립발기인 이 종 화 (인)

설립발기인 전 종 훈 (인)

설립발기인 천 윤 우 (인)

설립발기인 고 광 연 (인)

설립발기인 박 창 병 (인)